

# 「신한카드 법인회원약관」 개정 안내

항상 신한카드를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신한카드 법인회원약관이 개정되어 2026년 2월 27일 시행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개정 안내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별도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신용카드 법인회원 약관 개정(案) 신·구조문 대비표

※ 개정사유 : 공정위 시정유형 자체점검에 따른 개정 등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약관 내용	<p><b>제10조 (회원 및 카드의 이용한도)</b></p> <p>①~③ (생략)</p> <p>④ 제2항에 따라 이용한도를 감액하는 경우 회원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예정일로부터 14일 이전에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메시지, 팩스(FAX), 이용대금명세서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p> <p>⑤ (생략)</p>	<p><b>제10조 (회원 및 카드의 이용한도)</b></p> <p>①~③ (현행과 같음)</p> <p>④ 제2항에 따라 이용한도를 감액하는 경우 회원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예정일로부터 14일 이전에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메시지, 팩스(FAX), 이용대금명세서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u>단, 제7조 제1항의 사유로 한도를 감액하는 경우에는 감액한 후 지체없이 알려드립니다.</u></p> <p>⑤ (현행과 같음)</p>	이용한도의 감액관련 문구 추가
	<p><b>제27조 (연대보증인의 성립 및 책임)</b></p> <p>① 카드사는 회원에 대하여 회원과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할 연대보증인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p> <p>1. 회원이 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자 중 1인에 한함 가.~다. (생략) <u>&lt;신설&gt;</u> 2. (생략)</p> <p>②~⑥ (생략)</p>	<p><b>제27조 (연대보증인의 성립 및 책임)</b></p> <p>①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 가.~다. (현행과 같음) <u>라. 해당 법인과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법인</u> 2. (현행과 같음)</p> <p>②~⑥ (현행과 같음)</p>	연대보증인 입보 대상 추가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b>제28조 (연대보증계약의 해지)</b></p> <p>① (생략) 1. (생략) 2. 연대보증인의 <u>퇴직 또는</u> 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②~⑦ (생략)</p> <p><b>제34조(관할 법원)</b>            ①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의 주소지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카드사의 본점·다른 영업소로 그 채권관리를 위임한 경우에는 법이 정한 관할법원, 이관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소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② (생략)</p>	<p><b>제28조 (연대보증계약의 해지)</b></p> <p>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연대보증인의 <u>퇴직, 폐업 또는</u> 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②~⑦ (현행과 같음)</p> <p><b>제34조(관할 법원)</b>            ① 이 약관에 터잡은 거래에 관하여 카드사와 회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회원의 주소지 또는 카드사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카드사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 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② (현행과 같음)</p>	연대보증인 입보 대상 추가에 따른 문구추가
약관 내용			공정위 시정유형 자체 점검에 따른 개정 7. 고객에게 불리한 관할 조항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부칙	<p><b>제1조(시행일) (2021. 9. 25)</b>            이 약관은 2021년 9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제19조제1항 본문 및 제19조제1항제4호는 2021년 6월 1일부터 적용하며, 제16조제7항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신규 출시되는 상품 및 포인트 적립분부터 적용합니다.</p> <p><b>제1조(시행일) (2023. 8. 1)</b>            이 약관은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p> <p><b>제1조(시행일) (2024. 2. 29)</b>            이 약관은 2024년 2월 29일부터 시행합니다.</p> <p><b>제1조(시행일) (2025. 6. 1)</b>            이 약관은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p> <p><u>&lt;신설&gt;</u></p>	<p><b>제1조(시행일) (2021. 9. 25)</b>            (현행과 같음)</p> <p><b>제1조(시행일) (2023. 8. 1)</b>            (현행과 같음)</p> <p><b>제1조(시행일) (2024. 2. 29)</b>            (현행과 같음)</p> <p><b>제1조(시행일) (2025. 6. 1)</b>            (현행과 같음)</p> <p><b>제1조(시행일) (2026. 2. 27)</b>  <u>이 약관은 2026년 2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u></p>	약관변경에 따른 부칙반영